# 2018년 소방공무원법 정오표(8.6)

| 페이지(p) | 오(수정 전) | 정(수정 후) |
|---|---|---|
| p 19 (1)③㉡㉢(5.31 개정) |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 | 임용권 |
| p 19 ③ ㉢ 아래 ㉣ 추가 | | ㉣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p 29 임용권자 ③ ㉡㉢ |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 제외) | 삭제 |
| p 32 19번 정답 | × | ○ |
| p 40 24번 G,M |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 | 소속 소방정에 대한 전보 |
| p 40 24번 문제 해설 |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 제외) | 삭제 |
| p 40 25번 문제 해설 | 위임하고 있으나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소방청장이 가진다. | 위임하고 있다. 다만, 승진임용의 경우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p 40 25번 문제 정답 | B | A |
| p 51 61번 문제 G |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 소방령에 대한 강등이 가능하다. |
| p 51 61번 해설 G 대체 | | 중앙소방학교장은 소속 소방령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이 가능하다.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령에 대한 강등은 소방청장이 한다. |
| p 85 (3)③(5.31 개정) | 7일 | 3일 |
| p 90 (1) ②㉣ 아래 추가 | | ㉤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
| p 196 (3) ①㉡ | 3개월 | 6개월 |
| p 207 (3) 평정기간 | 5년에서 9년 | 4년에서 9년 |
| p 207 (3)②㉣ | 3년 | 2년 |
| p 207 (3)②㉤ | 2년 | 1년 |
| p 208 (4)③ⓔ | 셋째자녀부터는 | 둘째자녀부터는 |
| p 222 승진임용의 제한 | 3개월 | 6개월 |
| p 239 22번 문제 G | 24개월 | 27개월 |
| p 239 22번 해설 | 3개월, 총 24개월 | 6개월, 총 27개월 |
| p 257 76번 M | 24개월 | 25개월 |
| p 257 76번 해설 | 3개월, 총 22개월 | 6개월, 총 25개월 |

| | | |
|---|---|---|
| p 257 76번 정답 | G | M |
| p 267 (3) ④ | 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심사 |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심사 |
| p 280 (3) | 12년 | 10년 |
| p 281 (1)② | 3년간 | 2년간 |
| p 281 (2)② | 100분의 20 | 100분의 30 |
| p 282 실전연습 M | 2년간 | 3년간 |
| p 282 실전연습 해설 | 3년간 | 2년간 |
| p 289 승진심사위원회 2)② | 소방위 | 소방경 |
| p 292 근속승진임용기준 2)① | 3년간 | 2년간 |
| p 295 27번 답 | × | ○ |
| p 298 61번 |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자는 3년간) | 삭제 |
| p 302 7번 문제 M | 소방위 | 소방경 |
| p 302 7번 문제 M | 소방장 | 소방위 |
| p 307 23번 해설 ③ | 소방위 | 소방경 |
| p 307 24번 G 및 해설 | 소방위 | 소방경 |
| p 311 36번 문제 B | 4배수 | 5배의 범위 |
| p 321 65번 B 및 해설 | (소방경은 3년간) | 삭제 |
| p 322 66번 B | 3년간 | 2년간 |
| p 329 88번 B 및 해설 | 100분의 20 | 100분의 30 |
| p 406 41번 M<br>42번 G | 소방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
| p 453 도표 중앙119구조본부 | 소속 소방위 이하 | 소속 소방경 이하 |
| p 518 ③ 3. | 7일 | 3일 |
| p 542 2.1)④ 2.라 | 3년간 | 2년간 |
| p 542 2.1)④ 2.마 | 2년간 | 1년간 |

# 소방공무원 최근 법령개정 사항

## 1.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내용[시행 2018.5.31.]

(1) 소방청장 권한의 위임 조정

① 종전에는 소방청장이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면서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하였으나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도 가능하도록 하였다.(영 제3조 제2항 및 제3항)

②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3조 제5항)

(2) 임용시기의 특례(영 제5조)

① 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하도록 하였다.

(3) 임용순위(영 제19조 제2항)

임용순위에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5조제3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를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4) 응시수수료의 반환(영 제49조 제3항)

종전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 내용[시행 18.7.17.]

**(1) 승진임용제한기간의 가산**(영 제6조제1항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종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경력평정시 초과경력 평정기간의 단축**(영 제9조제4항제2호)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 시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소방장·지방소방장 및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경우 기본경력 전 3년에서 기본경력 전 2년으로,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 기본경력 전 2년에서 기본경력 전 1년으로 단축하였다.

**(3)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조정**(영 제19조제4호)

소방청 소속기관 중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승진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종전 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심사에서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심사로 관할을 조정하였다.

**(4) 소방경 근속승진 후보자의 기준 변경**(영 제6조의2제2항)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기준을 종전에는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였으나,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였다.

##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개정 내용[시행 18.7.17]

**(1) 전문교육성적 평정점에서 사이버교육과정 평정점 조정**(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전문교육성적 평정점을 종전에는 해당 계급에서 0.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성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2)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조정**(규칙 별표 3 중 초과경력란)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사의 경력평정 시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에 있는 해당 계급의 월별 점수 및 연수별 점수를 조정하였다.

## 법령 개정에 따른 교재 수정(정오표 미반영 내용)

p 19

(1) ③㉡아래 ㉣ 추가

㉣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3조 제5항)

p 23

(1) 임용일자

①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

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5.31.>

(3) 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① 순직한 사람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②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③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p 208(p225, p250) 경력평정기간 도표 대체

| | 평정기간 | 기본경력 | 초과경력 | 총평정점 |
|---|---|---|---|---|
| 소방정 | 7 | 4 | 3 | 30점(기본26 + 초과4) |
| 소방령 | 9 | 4 | 5 | 25점(기본22 + 초과3) |
| 소방경·위 | 8 | 4 | 4 | |
| 소방장 | 6 | 4 | 2 | |
| 소방교 | 5 | 3 | 2 | |
| 소방사 | 4 | 3 | 1 | |

p 210(p 542) 도표대체

<별표3 :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table>
<tr><th>구분</th><th>계급</th><th>연수</th><th>월별 점수</th><th>연수별 점수</th></tr>
<tr><td rowspan="3">기본<br>경력</td><td>소방정·<br>지방소방정</td><td>4년</td><td>0.541점</td><td><table><tr><td>연수</td><td>1년</td><td>2년</td><td>3년</td><td>4년</td></tr><tr><td>점수</td><td>6.49</td><td>12.98</td><td>19.48</td><td>26.00</td></tr></table></td></tr>
<tr><td>소방령·<br>지방소방령~<br>소방장·<br>지방소방장</td><td>4년</td><td>0.458점</td><td><table><tr><td>연수</td><td>1년</td><td>2년</td><td>3년</td><td>4년</td></tr><tr><td>점수</td><td>5.50</td><td>10.99</td><td>16.49</td><td>22.00</td></tr></table></td></tr>
<tr><td>소방교·<br>지방소방교<br>이하</td><td>3년</td><td>0.611점</td><td><table><tr><td>연수</td><td>1년</td><td>2년</td><td>3년</td></tr><tr><td>점수</td><td>7.33</td><td>14.66</td><td>22.00</td></tr></table></td></tr>
<tr><td>초과<br>경력</td><td>소방정·<br>지방소방정</td><td>3년</td><td>0.111점</td><td><table><tr><td>연수</td><td>1년</td><td>2년</td><td>3년</td></tr><tr><td>점수</td><td>1.33</td><td>2.66</td><td>4.00</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td><td>소방령·<br>지방소방령</td><td>5년</td><td>0.050점</td><td><table><tr><td>연수</td><td>1년</td><td>2년</td><td>3년</td><td>4년</td><td>5년</td></tr><tr><td>점수</td><td>0.60</td><td>1.20</td><td>1.80</td><td>2.40</td><td>3.00</td></tr></table></td></tr>
<tr><td>소방경·<br>지방소방경<br>소방위·<br>지방소방위</td><td>4년</td><td>0.062점</td><td><table><tr><td>연수</td><td>1년</td><td>2년</td><td>3년</td><td>4년</td></tr><tr><td>점수</td><td>0.74</td><td>1.49</td><td>2.23</td><td>3.00</td></tr></table></td></tr>
<tr><td>소방장·<br>지방소방장<br>소방교·<br>지방소방교</td><td>2년</td><td>0.125점</td><td><table><tr><td>연수</td><td>1년</td><td>2년</td></tr><tr><td>점수</td><td>1.50</td><td>3.0</td></tr></table></td></tr>
<tr><td>소방사·<br>지방소방사</td><td>1년</td><td>0.25점</td><td><table><tr><td>연수</td><td>1년</td></tr><tr><td>점수</td><td>3.0</td></tr></table></td></tr>
</table>

※비고 : 월별 점수에 근무한 기간(월)을 곱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p 502

3. 임용시기

1) 임용시기 [임용령 제4조]

①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31.>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5.31.>

③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임용시기의 특례 [임용령 제5조]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1.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